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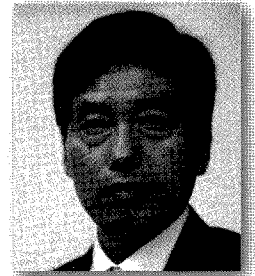
꼭 알아야 하는 산림 종묘생산 및 유통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몰라도 불편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하면 알면 편한 것이 있고 모르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은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는다면 꼭 알 필요가 없다. 반대로 부동산을 구입, 판매 혹은 증여 등 법률적 행위를 할 때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종묘와 관련된 지식도 종묘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생활지식과 마찬가지로 잘 알고 이에 맞춰서 행동하지 않으면 부지 부식 간에 경고장을 받거나 벌금 통지서를 받게 될 경우도 있으며 혹은 경찰서에 출두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 심한 경우는 형사 혹은 민사재판을 받게 되니 이에 관련된 제도(법률)를 자세히 꼭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종자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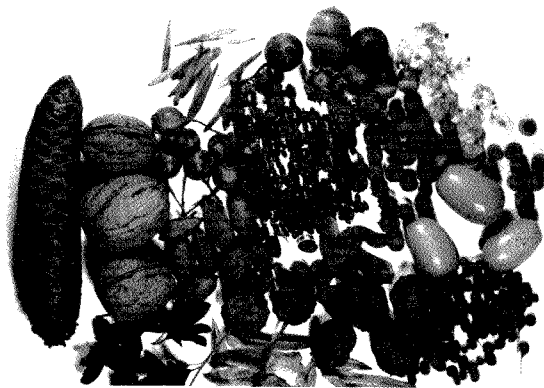
우선 입법(산림)종묘와 관련된 법률을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종자산업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산자법’이라고 지칭하겠음)이다. 종자산업법은 1995년에 만들어진 법률이고 산자법은 그 이후에 만들어졌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심사관 | 조경진

일반적으로 종자라 하면 소나무의 종자, 상수리 등 말 그대로의 종자만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종묘업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더 넓게 정의하고 적용하고 있다. 종자산업법에서는 종자는 씨앗, 버섯종균, 영양체, 포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 종자(씨앗), 버섯의 종균, 버섯포자, 고사리류, 김, 다시마 등의 포자를 포함한다. 물론 나무(수목) 뿐만 아니라 초본식물의 종자도 포함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영양체이다. 일반적으로 영양체라 하면 삽수, 접수, 취목 등 무성번식 영양체와 최근의 기술발달에 의한

조직배양체, 체세포배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다 광의로 영양체에 의해 만들어진 묘목까지 포함한다. 산자법에는 종자의 정의가 없었으나 최근에 정의를 추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종자에는 묘목이 포함되므로 결국은 “**종자나 영양체(무성번식체)에 의해 키워진 묘목**” 까지 포함 된다는 것이 종자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국립종자원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들의 최근 종자의 해석이다. 그러나 묘목의 크기는 명확히 규정된 것이 없다. 몇 년생이라든지 근원경이 몇 cm 라든지 하는 규정이 없다. 상식적으로 묘포장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묘목을 키워서 어느 정도 성장된 수목을 생산·판매할 경우 이에 대해 적용할 법률적 규정은 없다. 따라서 묘목을 구입하여 수년간 키운 것은 묘목으로 보지 않으므로 종자산업법 및 산자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산림종자



시설 양묘장

2. 종묘를 생산 혹은 판매하려는데 종자업과 종묘업은 무엇인가?

종자업(버섯, 포자 등을 제외한 순수한 종묘를 생산 혹은 판매)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자격기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설기준이다. 종자산업법에 의하면 임목(산림)종자는 기타로 분류되어 종묘 생산판매에 필요한 종자관련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시설만 갖추면 된다. 종자의 판매가 아닌 묘목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려면 1,000㎡(약 300평)의 포지를 갖추면 된다. 이 포지는 임차하여도 상관없다. 그러나 종자를 생산, 판매할 경우는 종자정선기, 건조기, 포장기를 각각 1대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물론 종자와 묘목을 동시에 취급한다면 토지와 기계를 모두 소유하여야 한다. 종자업 등록증을 얻으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종자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심사하여 종자업 등록증을 발급하여 준다. 해당 시청 혹은 도청 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산자법에서는 ‘종묘업’에는 자격기준과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시설기준으로 1ha 이상의 포지와 725㎡ 이상의 간이 온실을 갖추어야 한다. 물론 토지를 임차하여도 상관없다. 종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버섯은 일반 종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데 종자산업법의 버섯은 농업용 버섯으로 여기에는 양송이, 느타리 등이 해당되나 임업용 버섯은 표고, 꽃송이, 능이 등이 해당된다. 임업용 종균 혹은 버섯을 생산, 판매하려면 산자법에 의한 자격 및 시설기준을 따라야 한다. 자격기준으로 버섯종균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여야 하고, 시설기준으로 실험실, 준비실, 살균실 및 접종실, 배양실, 저장실과 현미경, 냉장고 등의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별지 제57호저지]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원	결재인원		
종자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전화번호)		
	④법인명칭		
내용	⑤상호		
	⑥종자업종류	<input type="checkbox"/> 채소 <input type="checkbox"/> 과수 <input type="checkbox"/> 화훼 <input type="checkbox"/> 버섯 <input type="checkbox"/> 농 <input type="checkbox"/> 식량작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⑦희급작물		
	⑧주사무소의 소재지		
	⑨주시설의 소재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종자업 신청서 양식

[별지 제6호저지] <개정 2010.9.1> (앞 쪽)			
접수인원	결재인원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대리인	④법인명칭	⑤전화번호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육성자	⑧주소	⑨전화번호 (외국인은 국적)	
	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⑫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⑬품종의 명칭			
⑭품종특성과정의 설명 (별지사용)			
⑮품종의 특성설명 (별지사용)			
⑯종자업 등록번호			
「종자산업법」 제1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서를 합니다.			

생산판매신고서 양식

3. 묘목을 생산·판매하는데 종자업 등록으로 충분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종자업 등록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종자산업법의 시행규칙(농림식품부령)에 의하면 생산·판매를 하려면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림종묘를 생산하거나 판매하고자 한다면 생산·판매신고서를 산림청장을 대신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생산·판매신고서 제출 시에는 서류에 종자업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법률에는 생산·판매의 대상을 그냥 종자가 아니고 '품종의 종자'라고 되어 있어 품종이 아닌 경우에는 생산·판매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 종자시장에서 품종으로 거래되는 비율이 아주 적기 때문에 시장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품종을 포함하여 모든 재래종자 혹은 야생종자, 외래종자도 신고하도록 관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신고할 때 한 장의 신고서에 한 종(품종)만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반면 한번 신고하면 두 번 다시 할 필요 없다. 종(품종) 당 3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버섯종균 등도 일반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한다. 기존에는 소량의 묘목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혹은 생산된 소량의 묘목을 구입하여 노점에서 판매할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었으나 현행 법에 의하면 생산·판매 등록이 없으면 위법이 된다.

4. 수출입 신고와 수입 적응성 시험은 어떤 경우 필요한가?

종자의 수출입 가능여부는 일단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통합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수입 적응성 시험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종자를 판매 또는 재배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데 산림수종의 경우 산림용 및 조경용 종자와 표고버섯류 등도 해당사항이다.

5. 종자 품질표시란?

일반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믿고 구매가 가능하도록 모든 종자 및 묘목에도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식물(품종)의 명칭, 수량, 종자의 경우 발아율, 생산년도, 포장연월, 버섯의 경우는 종균접종일, 생산·판매신고번호, 종자업등록번호, 신 품종으로 출원된 경우 출원공개번호 혹은 품종보호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산한 사람은 물론 중간 판매자의 경우도 생산자로부터 품질표시가 된 증서를 받아서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유통단속 할

때 종자나 묘목에 품질표시가 되어 있는지도 중점사항이다.

6. 종자(묘)업 관련법 위반에는 어떤 처벌이 따를까?


실제 종묘관련 위반에는 상당히 엄한 처벌이 따른다. 앞에서 설명한 **종자업 등록 및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 적응성 시험**을 하지 않은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관계 당국 혹은 관계인이 경찰서에 고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래 표와 같이 품질표시 미이행, 품종명칭 미등록 종자 판매, 유통조사 방해 및 거부 시에는 1회의 위반행위에도 최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사전에 앞에서 설명한 제도를 잘 이해하고 따라야만 개인적인 처벌 혹은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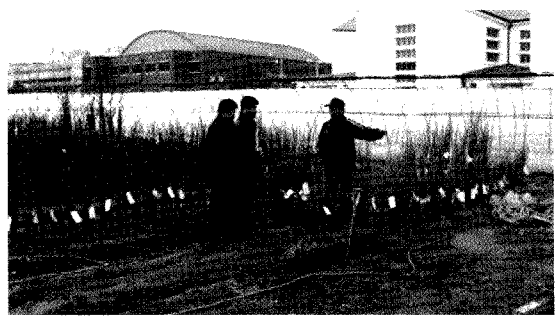
〈표 1〉 종자산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위반행위	부과금액(만원, 횟수별)		
	1회	2회	3회
품질표시 미이행 종자판매	100	300	500
품종명칭 미등록 종자판매	300	400	500
조사 혹은 종자수거의 거부 및 방해	100	300	500

7. 종묘 유통조사

현재 종묘 유통조사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와 국립종자원 두 기관이 있으며 지방의 시·도 공무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 두 기관은 각기 품목을 구분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추나무, 감나무, 소나무 등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자두나무, 살구나무, 단감나무, 매실나무, 철쭉 등은 국립종자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에서는 전부터 유통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으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유통 등의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까지는 계도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산림관련 종묘를 담당하는 국립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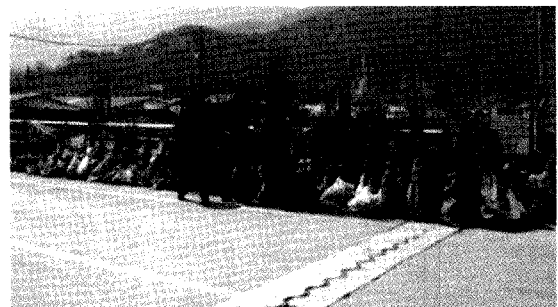
림품종관리센터도 단속 기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내년부터는 계도위주에서 단속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점으로 단속하는 부분은 종자업등록, 생산·수입판매 신고 유무, 종묘의 품질표시 여부 등이다. 특히 영세한 묘목업 종사자 예를 들면 집에서 재배할 목적으로 과수나 소나무 등 조경수 묘목 몇 본을 생산한 후 나머지를 판매하거나, 묘목업자로부터 묘목 몇 개를 구입하여 시장통이나 노점에서 판매한 경우 일지라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봄철에 감나무, 대추나무, 밤나무 등 유실수와 소나무, 주목나무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다. 모든 나무, 버섯종균 및 야생화 등도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묘묘장 유통단속



표고버섯 종균 생산공장 조사



5일장 묘목단속